아산 탕정 유니콘 101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입주자 모집공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아산시 허가담당관-2355(2021. 1. 13)로 분양신고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19-허가담당관-신축허가-378, 2019. 12. 06.]
■ 본 분양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1. 지식산업센터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

가. 지식산업센터의 명칭 : 아산탕정 유니콘 101 지식산업센터
나.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728
다. 건설규모 (단위 : ㎡)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13,510.90	지하2층 ~ 지상10층	8,093.50	74,215.81

라. 설립자 명의
1) 사업주체(시행수탁사)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2) 시공사 : 동서건설 주식회사
3) (시행)위탁사 : 주식회사 리앤에스하우징

2. 개별용도별 공급면적

가. 용도별 공급면적 (단위 : ㎡)

용 도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대지지분	호실수
			공통 공용	기타 공용	기계, 전기실	주차장	소계			
공장시설	공장	25,252.86	7,592.59	1,938.93	465.96	10,790.39	20,787.87	46,040.73	8,378.77	330실
	소계	25,252.86	7,592.59	1,938.93	465.96	10,790.39	20,787.87	46,040.73	8,378.77	330실
지원시설	근생시설	6,464.62	729.4	496.36	119.28	3,501.30	4,846.34	11,310.96	2,144.93	69실
	기숙사	9,003.17	3,672.25	691.27	166.13	3,331.30	7,860.95	16,864.12	2,987.21	291실
	소계	15,467.79	4,401.65	1,187.62	285.41	6,832.61	12,707.29	28,175.08	5,132.13	360실
총 계		40,720.65	11,994.24	3,126.55	751.37	17,623.00	33,495.16	74,215.81	13,510.90	690실

※ 단위호실면적에 따라 공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면적을 조정할 수 있음.
나. 최소 공급 분양면적
1) 지식산업센터(공장시설) : 56.61㎡ 이상공급
2)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 40.60㎡ 이상공급
3) 지원시설(기숙사) : 49.82㎡ 이상공급

3. 공급금액가격과 계약금 · 중도금 등의 납부시기

가. 층별평균분양가격 (단위 : 천원/㎡, Vat별도)

구 분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지식산업센터(공장)		-	1,958	1,959	1,911	1,911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5,514	3,365	-	-	-
	기숙사	-	-	-	-	-

구 분		지상6층	지상7층	지상8층	지상9층	지상10층
지식산업센터(공장)		1,911	1,926	-	-	-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	-	-	-	-
	기숙사	-	-	2,364	2,336	2,304

나. 대금납부시기 및 방법

구 분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5차중도금	잔금
납부시기		계약시	지정일	지정일	지정일	지정일	지정일	입주예정일
지식산업센터(공장)		10%	10%	10%	10%	10%	10%	40%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10%	10%	10%	10%	10%	-	50%
	기숙사	10%	10%	10%	10%	10%	10%	40%

※ 중도금 납부일정 및 비율은 사업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체결시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람.
※ 중도금 납부지정일 이후 계약자의 경우 공급자와 수분양자간 계약시에 상호 조정하여 정함.
다. 공통사항
○ 상기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의 공급금액은 층별, 호실별, 용도별, 층 및 향 등에 따라 분양가가 상이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계약시 분양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층별, 호실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총 합계금액 내에서 편의상 부가세 금액 및 대지비는 천단위 미만에서 절상하였고, 해당 절상금액은 건축비에서 감하여 조정반영하였습니다.
○ 상기 분양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시 면적 및 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 기준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입주자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가.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주대상 업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동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및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규정에 의한 입주가능 대상 업종
1) 지식산업시설 (공장)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동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동법 시행령 제34조(도시형 공장의 구분 및 범위),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의 규정을 갖춘 업체
※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소음, 분진, 폐수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신고대상 업체는 입주불가
※ 대기, 소음, 진동 관련법 규정에 따른 기준 미만이라도 인근 공장에 피해가 없어야 함
※ 기계시설 없이 단순조립포장은 제조업이 아님.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5의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 및 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면적 범위 이내 시설에 한하며, 지원시설 중 판매업은 당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입주제외 대상 업체
1) 대기환경보전법 법규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기준 미만이라도 인근 공장에 피해가 없어야 함
2) 수질환경보전법 법규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3) 기타 환경관계 법규상 특정 유해물질 또는 중금속 배출업소
4) 염색, 피혁, 연탄, 시멘트제품 제조업 및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제조업, 도정 및 도축업 등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체
5) 소방기본법 제15조, 제27조에 의한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 특수가연물을 취급하는 공장
6) 고하중(당해 건축물 설계하중 초과) 기계장치 설치 및 물품을 적재함으로서 공장유지 관리에 위해가 되는 업체
7) 기타 소음, 진동, 먼지 등이 다량 발생하거나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유지 및 다른 업체의 생산 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공장
8) 기타(기계, 전기설비 등) 설계상 입주 용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업체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의5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체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이 아닌 업종

5. 입주예정월 : 2023년 3월(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부대시설 · 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구분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공동시설				
	주차장	엘리베이터			구분	회의실	휘트니스	공동취사	휴게실
규모	17,622.9949㎡	화물용	2.0ton(적재하중)	2대	개소 / 면적	12 / 339.48㎡	1 / 345.13㎡	6 / 202.26㎡	6 / 432.45㎡
		승객용	18인승	8대					
			15인승	3대					
		비상용	15인승	2대					

※ 상기 시설 일부는 입주 시 개소 및 면적, 위치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7. 입주자 선정 일시 · 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안내
○ 계약일시 :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익일로 한다
○ 선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후 분양신청 접수하여 상기의 입주자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의 유자격자에 한해 선착순 분양한다.
○ 계약체결장소 : 아산탕정 유니콘 101 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7 (공수리 1664) 2층 / 문의전화 : 1666-1021)
○ 계약금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나. 분양신청 및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개인	1. 분양신청서(당사 소정양식),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계약용) 및 인감도장 2.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등)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3.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계약금 전부)
법인	1. 분양신청서(당사 소정양식)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계약용)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4.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등)[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5.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계약금 전부)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하며, 상기 본인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1.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계약 위임용) 2.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당사 분양홍보관에 양식 비치) 3.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등) 및 도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공란임으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분양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 국내거주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2)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이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3)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설립 후 국내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이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다.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자(수분양자)는 본 분양공고문의 제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해지)조치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판매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전 사업부지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호실에 대한 면적, 공급금액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등은 건축허가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하여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수분양자(계약자)가 하였을 경우 사업주체는 14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 및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중소기업일 것)과, 동법 제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원시설에 의한 시설에 따라 공장시설과 지원시설에 입주 가능업체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상기 법률 등에 의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위 건물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건물의 형상을 분양자의 승인 없이 변경(형상변경 또는 증축 등) 하였을 때
3) 분양대금을 납부기일 내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미납부 또는 중도금을 60일 이상 연체하거나 잔금을 약정일(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분양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였을 때
5)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수분양자(계약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분양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6) 각층의 적정 설계기준(소음, 진동, 하중 등)을 초과하는 기계 및 장비를 반입 설치 또는 적재하는 경우
7) 기존 시설물의 원형변경, 집합건물 및 타 업체에 위해 되는 일체의 행위(화재위험물반입, 소음, 공해유출 등)를 한 경우
8) 공용시설 및 면적을 부당하게 점거하여 사용하는 경우
9) 자치관리기구가 정하는 제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0)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의 보증에 의하여 중도금 대출이 알선되므로 수분양자(계약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서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11) 수분양자(계약자)의 파산, 회생 등 절차 신청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
12)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시 부적합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주하는 경우
13) 기타 분양계약서(입주운영계획서 포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마.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 잔금은 별도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무통장 입금시 층,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자 표시 (예시 : 1층 101호 홍길동 → 101홍길동)]
○ 계약금 납부 :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분양홍보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홍보관 수납불가)
○ 계약체결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 납입(계좌오류 입력 등)에 따른 문제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 계약 시 세대별로 별도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 은행영업일로 합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라며, 당사 분양홍보관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예금주 ㈜하나자산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의한 분양사업자로 분양수입금을 관리합니다

구 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지식산업센터(공장)	102-910071-32004	KEB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102-910071-33604		
지원시설(기숙사)	102-910071-34204		

바. 중도금 관련 참고사항
○ 대출금액 : 납부금액 중 중도금 납입분에 한하며,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공장시설은 총 분양대금의 50% 이내(근린생활시설은 40% 이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1회차 이상을 납부한 후 계약해지 시 또는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했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모두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조건은 계약자의 금융기관 대출자격조건이 되는 분에 한하며, 대출불가 시 "계약자본인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대출 불가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신용도 등의 사유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신청 및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 불가)
○ 대출기관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이며,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지정된 중도금 대출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부담(납부)하며(단,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 및 개인이 당 사업지 내 2개 호실 이상을 계약하는 경우 일부 호실에 대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 한도 등을 금융기관과 사전에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예정일자이고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8. 층별, 공장별 허용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구분	제원				비 고
	층별	층고(m)		천장고(m)	
층별 층고	지하2층	주차장, 창고	3.6	-	시공시 층고 및 천장고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용역원실, 관리사무소	3.6	2.7	
		전기실	8.6	-	
		기계실	8.6	-	
	지하1층	주차장	5	-	
		입주자 회의실	5	2.7	
	지상1층	4.1~8.2		2.4~6.6	
	지상2~3층	5.2		2.4~3.6	
	지상4~6층	4		2.4~2.7	
	지상7층	4.4		2.4~2.7	
	지상8~10층	4.3		2.4~3.6	
구 분	층 별	용도		설계하중(kN/㎡)	지하1층 진입가능차량(진입가능높이) : 2.5M (실시설계 및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설계(적재) 하중	지하2층	기계실 / 전기실		10.0	건축물 설계기준(하중)을 초과하는 기계장치 설치 업체는 입주불가
		주차장		3.0	
	지하1층	주차장		3.0	
	지상1층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5.0	
		공지		16.0	
	지상2층	지식산업센터		6.0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4.0	
	지상3~7층	지식산업센터		6.0	
	지상8~10층	부대시설(기숙사)		4.0	
소음 진동 기준	소음, 진동규제법 제8조,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함				· 대기, 소음, 진동 관련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 기계장치 설치 업체는 입주 불가 · 대기, 소음, 진동 관련법 규정에 따른 기준 미만이라도 인근 공장에 피해가 없어야 함
건축물 외부마감	· 공장 : 지정석재 + 쉬트판넬 + T24 알로이복층유리 · 근린생활시설 : 지정석재 + T24 알로이복층유리 · 기숙사 : 페인트 + T24 알로이복층유리				시공시 마감의 종류는 변경될 수 있음.
건축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전력공급	수전용량		7,000KW		시공 시 전력용량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발전용량		600KW		
전화회선	국선		2,000P		시공 시 회선수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내선		8,000P		
내부마감	지식산업센터(공장)	바닥	비닐타일		전용공간 (실시설계 및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벽	페인트		
		천장	불연천정재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바닥	시멘트몰탈		
		벽	페인트		
		천장	-		
	지원시설(기숙사)	바닥	강마루		
		벽	벽지		
		천장	천장지		

※ 상기 시설 일부는 입주 시 면적 및 위치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9. 기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필요한 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위탁자 : (주)리앤에스하우징, 수탁자 : (주)하나자산신탁]을 원인으로 신탁 등기된 신탁재산으로, 이를 분양함에 있어 매도자(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을 "갑", 매수자를 "을", 시공사 동서건설(주)을 "병", 위탁자 ㈜리앤에스하우징을 "정"으로 칭하여 각 당사자들은 아래의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및 숙지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지정업종 호실
• 일부 호실은 편의점(지상1층 2-108호), 서적 및 문구용품점(문구, 펜시 포함(지상1층 1-111호·1-112호)), 세탁소(지상1층 1-110호)로 업종을 지정하고 지정 호실 이외 호실은 해당 업종의 영업은 불가함. 상기 업종지정된 호실은 지정업종 외 자유 업종으로 관련법규 내에서 전환 가능하고,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입주 시 업종은 계약 시 표시된 용도 및 업종으로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용도 및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입주 전에는 위탁사와 서면 협의하여야 하며, 입주 후에는 관련 법규 및 근린생활시설 자치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자치규정 제정이전일 경우에는 위탁사와 협의하도록 함.
• 타 호실 입점자(계약자)는 업종이 지정된 점포와 중복으로 입주할 수 없으며, 향후 편성 운영된 관리단의 관리규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계약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호실별 면적(㎡) × 0.3025)
• 면적은 소수점 2째자리 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분양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호실별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공급안내문 및 카다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여야 함.
•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분양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고, 차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이후 주소변경[전자주소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위탁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해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시 모형 및 분양 유인물 등에 표현된 명칭 및 호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아산시청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상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은 관계 법령에 따른 대관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식산업센터는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공급자와는 무관한 사항임.
• 계약자는 시공 중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 시설변경으로 인한 일부 호실 등의 수치변경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기로 함.
• 측정결과에 따라 대지주위도로 폭,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 따라 대지 경계 선형의 변경,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공급안내서 등에 표현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색채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입주자 동의 없이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식산업센터의 서비스 면적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시 분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지식산업센터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되며, 일부 외부인에게 개방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조명, 보도블럭 등 공용시설물로 인한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타지역, 타사 및 당사의 타 지식산업센터의 마감사양설치 및 부대시설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급안내서 및 인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이외의 추가적인 마감 및 부대편의시설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람.
• 본 건축물 주변 도로, 및 항공기노선 등 단지 외부의 공개공지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건축물은 대지의 별도 구획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세대별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공용시설(부대복리시설(휴게공간), 기계실, 주차장 등) 면적은 각 호실 전용면적에 따라 전체 세대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으며, 입주 후 공용부분 관리비는 세대면적에 따라 균등부과 될 수 있음.
•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인 268대 이상으로 설계되어 532대의 주차가능대수 범위 내에서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지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숙사)과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입주 시 이삿짐용 사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며, 엘리베이터만 사용 가능함. (단, 엘리베이터로 운반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공유 시설물 및 대지는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입주자(계약자)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입주자(계약자) 개인 소유 면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 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등)은 설계변경 시 준공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한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분양홍보관 비치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함.
•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시행위탁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사업주체에게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상담 시 설명 들으신 투자수익률 등은 예시 사항이며 전매 및 임대 등의 조건 등은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및 등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관리함.
•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입주 후 하자보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함.
• 지식산업센터의 호실별 용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지원시설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입주 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 후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에 의한 입주자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이나 주요 구조부를 철거, 파손, 훼손하는 행위 및 건축 허가 시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임대할 수 없으며 권한이 없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취득세 및 지방세 경감혜택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관청에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주자는 공용부 보안시스템과 개별 실 보안서비스의 연동을 통한 통합관리 효율성과 입주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설 보안 및 시스템경비 업체 선정에 있어 준공 전 위탁사가 사전 선정함을 동의함.
(계약시 유의사항)
• 건물의 색채, 측벽로고 설치, 옥외시설 및 세부사항(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 포함)은 실제 시공시 분양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자재(석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울 수 있음.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조감도, 위치도, 투시도, 조경CG 등 카다로그, 팜플렛, 각종 인쇄물 등의 이미지는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최종 준공도면에 준하여 시공되고,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고, 단지 주변은 분양시점에 표현된 조감도, 배치도, 모형 등의 주변사항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함.
• 계약자는 계약체결전 사업지 방문을 통해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자의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사업주체 등에게 물을 수 없다. 또한 향후 주변 고층건물 등의 건설 및 주변시설, 혐오시설,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의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 저층부 일부 호실은 조경용 수목, 전신주 보안등(가로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수목이식 및 추가식재, 전주이설 등의 조치는 불가함을 인정하고, 이 계약체결 후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으로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마감재도 동등품질 이상 제품으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계약 이후 분양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함.
• 건폐율, 용적율,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물의 내부 시설물 등은 최종 건축허가(준공)도서에 의거하여 시공 및 설치되어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함.
• 계약자는 차량출입구,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실, 저수조, 발전기실, 전력공급기, 옥상층에 위치한 설비시설,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주차관제실, 승강기,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에 인접한 일부세대에 소음, 진동 등의 생활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자는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이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대관협의 등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 등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레벨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한다.
• 공장의 발코니는 확장할 수 없으며, 발코니 천정 마감은 없음.
• 소방관련 법령에 의해서 소방구역에 따른 방화벽 등 설치 시 임의 조정 및 불법 철거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부에는 환기설비를 위한 환기루버 또는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음.
• 인접대지와의 협의과정 및 단지내부 단차발생 등에 의하여 토목구조물(옹벽, 조경석 쌓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각실 진입 출입문 위치 및 출입문 열림 방향은 성능개선 및 품질을 재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시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분양상황 등 경우에 따라 사우나(또는 스파, 온천수 등 포함) 관련 시설이 입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지(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원)
• 착공 후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 및 설계변경(증축, 면적 변경, 입면 및 층고 변경, 옥상조경면적 변경, 사용 및 환경성 향상, 상품 개선을 위한 공법 등을 포함)을 할 수 있음.
• 건축법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을 확인, 수인하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내 입주자(계약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입주자(계약자)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함.
• 내외부 조경, 조명,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이 설치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공장 및 지원시설(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입실자(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일부 호실은 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위치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계약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의 변경 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함.
• 입주자(계약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지정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고, 입주 시 및 입주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입주자(계약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이에 관여하지 않음.
• 분양된 호실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호실관리, 영업 인·허가 및 용도변경 등)와 인·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 사항 등은 입주자(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함.
• 지상1층 주차 진·출입구 주변의 차량의 소음 및 진동, 야간의 차량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시설 입주 시 주변 단지의 공사가 진행 예정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택지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음. (사업지 인근의 지원시설 용지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지구 내외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변 생활환경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상1층 주차램프 인근에 자전거 주차대가 설치되므로 통행의 불편 및 장비 인입 시 임의 사용점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일부 점포의 용도가 제한될 수 있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풍압 및 풍량으로 인한 소음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건물의 보이드(void) 공간으로 인한 강우, 외부공기가 유입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수분양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공급자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건 공급대상 건축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공급계약 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시공여건, 입주자(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수분양자의 동의 및 통보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단지)
• 부지 북측 도로폭 20m 및 동측, 남측은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이로 인한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건물 특성상 별도의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음.
•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품 보관소로 인해 냄새, 조망간섭,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시설 및 대지는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입주자(계약자)와 공동지분으로 하며 개별 호실 소유권과 지분을 주장할 수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은 현장의 실제 여건상 규모,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사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사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관련 법규 및 심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팬룸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대하여 인지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전후면 공용 부문을 임의로 전용면적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공용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시행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에너지절약계획서 EPI 점수 74점 이상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취득점수 변경에 따른 창호 및 단열사양 변경될 수 있음.)
• 로비, 엘리베이터, 홀, 복도 등 공용 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외광고물(간판)은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설치할 수 없음.
• 각 호실의 시설기준은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 사용검사 받은 상태대로 분양하며 입주 업체의 특성에 따른 내장재 변경과 추가 설치되는 공사는 입주자(계약자)부담으로 시공해야 함.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는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가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준공시까지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의 보행 동선, 입면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설계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장은 용도별로 계획주차대수에 의해 주차 배정 시 건물 내 구획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차 관리 및 운영은 시행사 또는 위탁사가 정하는 관리규정이나 입실 후 편성 운영된 관리단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주차는 지식산업센터 325대, 근린생활시설 106대, 기숙사 101대, 총 532대(장애인 주차 포함)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음.
• 내부도로 및 주변도로는 대지레벨차이로 인하여 계단 및 경사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 호실의 출입구에 일부 경사로 또는 계단이 설치될 수 있음.
• 대지레벨차이로 인해 설치되는 경사로에 의해 발생하는 단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흙막이 공법 변경, 구조벽체 두께 및 위치 셋백 등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접한 43번 국도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지의 단차 처리는 시공시 공법과 일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추후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은 구획 및 세부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지와 관련한 각종 평가(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내용 중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전면 및 후면, 옥상정원 등에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이로 인한 일부 근린생활시설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용승인 이후 단지 내 조경 시설물,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함.
• 홀 및 로비는 전체 공용시설로 홀 및 로비에 면한 점포의 벽체는 임의로 해체 및 변경할 수 없음.
(기계전기설비)
• 관계법령에 의거 실내천장 내에 기계식 환기 장치 및 제연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천장 점검구 및 환기구가 설치됨.
• 관계법령에 의해 지상1층에 상수도 소화전 및 연결송수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기계실 및 기전실은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됨.
• 계약용량 외에 입주자(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입주자(계약자)가 공사해야 함.
• 설계변경에 따른 옥내소화전, 방수기구함, 완강기, 거실통로유도등, 시각 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복도 및 엘리베이터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원시설에는 가스배관이 설치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가스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장 및 지원시설(기숙사, 근린생활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계약자)에 의해 벽체 철거/변경 시 경량벽체에 설치된 기구, 배관/배선 등은 입주자(계약자)가 공사해야 함.
• 기계전기설비 시스템은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기숙사, 근린생활시설) 통합설치 운영되어짐.
• 기계실은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기숙사,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짐.
• 근린생활시설 천정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설비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1층 공용화장실 위(중층)부분에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방환기의 경우 매장별로 배기 덕트가 인입(천정내)되어 있으며, 사용을 위하여 연결 및 제어관련 공사는 입주자(계약자) 공사분임.
• 주방환기의 경우 계획된 용량 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환기설비를 입주자(계약자) 공사분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등이 인근실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상호 간의 민원 발생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계약자)에 있음.
• 주방환기 메인덕트의 경우 공동사용이므로 이에 대한 임의 변경/철거 등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에는 급수공급배관(급탕제외)이 설치되며, 급수배관은 계량기를 설치, 마감 처리하며 이후 공사는 입주자 공사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계량기는 입주자(계약자) 설치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에는 기본 급수 및 배수 시설이 임의적인 위치에 설치되며 추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내부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용 배관은 일부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공간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에는 별도의 온수배관(급탕)이 없으므로 필요 시 입주자(계약자)가 별도로 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 옥상에는 건물 전체에서 사용하는 송풍기 등 장비가 설치되며 건물 내부에 환기를 위한 샤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자는 이의제기 및 시설 임의해체, 변경 등을 할 수 없음.
• 지상 옥외공간에 Dry Area(급배기타워) 및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인접호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상 옥외공간에 DA공간은 구역별 급배기를 위한 설비 통로공간으로 입주자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도면상에 표현된 DA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보행 및 단지 진출입시 바람, 소음, 매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허가도면, 착공도면, 본보기집 등에 명시된 기계전기설비 용량, 개수 및 상세사양은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상세설계진행 및 시공과정에 의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각 입주 시설에 대한 기계전기설비의 성능 및 기본 사양은 변동 없음)
• 건축 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15/18인승, 속도 105M/MIN(지식산업센터, 기숙사), 60M/MIN(근린생활시설)이며, 시공 중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건축 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2.0Ton, 속도 60M/MIN이며, 시공 중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는 동 건물의 전기공급이 중지되었을 경우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용 자가발전기 및 무정전공급장치(UPS) 등이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시설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건물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조명시설, 이동통신중계장비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계약자는 추가방범이 필요시 적절한 자체보호 장치(방범용 감지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시설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발전기 등) 및 냄새(발전기 연기 등),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식산업센터/상가 내부에 설치되는 세대분전반과 통신단자함은 노출설치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입구와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저층부의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은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
• 주차램프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은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점포별 유의사항)
• 수분양자(계약자)는 아래의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하며 이로 인한 사항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1. 수분양자 호실 내 급배수 배관의 연장 또는 철거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함.
2. 내·외부의 유리 및 프레임 부속철물 등의 크기, 간격,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 등은 현장여건 및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 등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됨.
3. 계약 점포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음.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점포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비상구완강기 등 법적 설비설치)을 완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계약자)에게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바닥은 시멘트몰탈로 최종마감재는 입주자(계약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사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천정은 노출천정으로 최종마감재는 입주자(계약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사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은 입주자(계약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사하여야 함.
• 본 근린생활시설은 각 점포간 벽이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함.
• 일부 점포는 공사 시공 중에 샘플실 및 현장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음.
• 일부 점포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고, 점검구 위치는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점포의 천정고는 설비 및 기타사항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급배수 배관은 점포별로 시공되며, 입주자(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복도 및 외부에 가스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가스배관 마감(캡)이후 필요시 입주자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메타기(원격검침형) 및 배관을 연결, 설치해야 함.
• 입주 후 입주자(계약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해야 함.
• 방화구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점포 내부 또는 점포간 또는 점포 전면에 설치되는 방화벽 및 방화셔터를 포함한 관련 설치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존 2개 점포를 1개 점포로 구성 시, 기 시공된 칸막이벽체 등 철거에 따른 비용과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피난 및 소방관련 설비의 설치비용은 입주자(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방화구획 설치에 따라 기존 2개 이상의 점포를 1개 점포로 구성하는 것이 불가할 수 있음.
• 외부에 접한 근생상가 출입구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에 따라 점자블럭이 설치 됨.
• 각종 부대시설은 전용으로 활용될 수 없음.
• 관련 법규("담배 사업권")에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담배판매업 등록은 편의점으로 지정된 점포에서만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 일부 호실 전면부에는 우수처리를 위한 트랜치 및 맨홀 등이 계획되어 설치할 수 있음.
• 해당 건물은 지식산업센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1항에 해당하는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숙사)
• 기숙사 다락의 층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에 따라 1.5m이하로 계획되며, 홍보관 내 견본 기숙사의 다락천정고는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숙사 다락 상부는 윗층의 화장실과 면해 있어, 일부 오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계, 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은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기숙사 거실에는 천정형 에어컨(냉방전용,1way)이 1개소가 설치된다.
• 기숙사 테라스 외부창호는 강화 유리 난간대가 시공되며, 일부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숙사 화장실 바닥은 난방이 시공되지 않는다.
• 기숙사 내부의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정)은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는다.
• 기숙사 814호, 914호, 1014호는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로 설치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관계법령에 의거 기숙사 내에 기계식 환기 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천장 점검구 및 환기구가 설치됨.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등의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비디오폰,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분전함, 배선기구류의 제품 디자인, 사양 및 설치 위치는 시공사 기준에 따라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다.
• 분양홍보관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으로 시공된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분양홍보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 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다.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천장 등에 설치된다.
• 본 공사시 석재, 대리석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분양홍보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다.
•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본 공사시 커튼박스의 깊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생산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한다.
• 분양홍보관 내에는 기본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분양홍보관의 전시품목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분양홍보관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분양홍보관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분양홍보관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된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는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품의 사양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 기숙사 호실내 전열교환기 위치는 실내 혹은 발코니 천장에 설치될 수 있다.
• 본 공사시 복도 및 호실내부(보일러실 등)에 도시가스 배관 및 미터기 등이 노출로 시공된다.

10. 관리형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식회사 리앤에스하우징,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동서건설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리앤에스하우징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리앤에스하우징과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 · 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리앤에스하우징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 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리앤에스하우징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리앤에스하우징과 시공사인 동서건설 주식회사에게 있습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1. 부동산개발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구 분	광고게재문구	비 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등록번호 : 서울 080007)	
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인허가 명칭	- 유니콘101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기관	- 아산시청	
인허가 번호 및 연월일	- 2019-허가담당관-신축허가-378 / 2019년 12월 06일	
소재지, 지목, 용도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728 - 지목 : 대 - 용도 :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공사착공 / 준공 / 입주예정일	착공일 : 2021년 1월 준공예정일 : 2022년 12월 입주예정일 : 2023년 3월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매도인 겸 시행수탁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시공자	동서건설 주식회사	
시행위탁사 겸 수익자	주식회사 리앤에스하우징	
자금관리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12. 분양홍보관 위치

홍보관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7 (공수리 1664)

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728

분양문의 1666-1021

시행위탁자 : (주)리앤에스하우징 시행수탁자 : 하나자산신탁 시공사 : DAESANG 동서건설(주)

동서건설(주)는 국내 27개사, 해외 17개사로 구성된 대상그룹의 계열사입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서 분양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